

사고접수 유의사항

※본 사고접수 유의사항은 청구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.
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본 지침과 약관 내용상 불일치가 있는 경우 약관의 내용에 의합니다.

제출서류

본 신청서와 함께 하기의 서류를 Claim.KR@Chubb.com 이메일 또는 우편(상기 주소 참조)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1. 보험금 청구서 (유첨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포함), 통장사본
2. 피보험자 신분증사본 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앞면)
3.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(경찰서)
4. 지급정지 사실통지서(은행)
5. 피해구제 신청서(은행)
6. 이체 당시 해당은행 거래명세표 또는 해당내역 통장사본

보상하는 손해 유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싱: 공공기관, 금융기관, 수사기관,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/기업을 가장한 메일/ 문자메세지/ 메신저 등을 보내어 비밀번호, 카드 정보 등 금융정보를 얻어내는 것 2. 스미싱: 핸드폰 문자/메신저 등에서 인터넷 주소 클릭 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피싱의 한 기법 3. 해킹 금융사기: 개인의 컴퓨터(PC)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거나 정보를 조작하여 비밀번호, 카드 정보 등 개인/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4. 파밍: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 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해킹의 한 기법 5. 메모리해킹: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몇 자리만 입력해도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해킹의 한 기법
유의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험금 청구서의 모든 항목을 반드시 기입합니다. (단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메일 주소는 생략 가능합니다.) 2. 본 보험사고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, 경찰/검찰 조사기록 등을 따릅니다.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 및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신고 및 서류 준비 절차: 피싱해킹 사고 사실 경찰 신고 (경찰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금융기관 지급정지 신고 핫라인 연결) > 경찰서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작성 > 금융기관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> 지급정지 사실통지서 발급
보상하지 않는 손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한민국 외에서 발생한 손해: 해외에서 무단결제된 신용카드 사고 등 2. 보험기간 외에 발생한 사고: 보험기간 시작 전 or 종료 후 발생한 사고 3.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: 피싱/해킹 등 사기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4. 전기통신사기 피해환급금을 받은 경우: 사고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로 해당 계좌에서 환급받은 피해환급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보장가능합니다. 5. 다른 보험 및 금융기관, 제 3자로부터 보상받은 경우: 본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으로 담보된 금액은 본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. 본 사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제 3자의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은 보상되지 않습니다. 6. 카드 분실, 도난, 위변조 등 사고

- 7. 사업/ 업무 관련 사고, 법인용 계좌에서 발생한 손해: 본 보험은 개인보험으로, 사업상 송금이나 법인 계좌에서 일어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
- 8. 개인용 컴퓨터 이외 메인프레임, 서버 등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.

보험금 지급절차 안내

저희 에이스손해보험을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. 고객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, 보험금 청구에 따른 지급절차 등 중요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

- 회사는 보험금 등 청구 시 최종구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7일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지급할 보험금액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상법 및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%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.
-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, 지급예정일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.



보험금 청구서 (피싱&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)

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

계약사항

증권번호	
계약자/피보험자	주민등록번호
연락처(휴대폰)	이메일 (선택)
주소	

사고내용

사고일시	[]년 []월 []일([]시 []분)				
사고장소					
사고내용 (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)					
사고 당시 입금 관련 사항을 별도 기재 요청드립니다. (이체한 계좌가 여러 계좌일 경우 서류 여백에 별도 기재 요청드립니다.)	본인통장 은행명	[]은행	이체금액	₩ []	
	이체 받은 은행명	[]은행	이체 받은 자의 예금주명		
금번 사고를 신고한 경찰서?	담당 경찰서		담당 경찰관 이름		담당 경찰관 연락처
이체 금액 중 지급정지된 금액이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네 (있을 경우 그 금액? ₩ [])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				
손해발생한 금액 중 피해환급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네 (있을 경우 그 금액? ₩ [])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				
상기 지급정지 금액 및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실제 피해액은 총 얼마입니까?	₩ []				

타보험

타사가입보험	다른 보험사에 계약이 있으면 회사명 및 보험종목을 적어주십시오(생명보험, 손해보험, 공제조합)
--------	--

보험금 송금계좌

은행	계좌번호
피보험자	주민등록번호

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

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: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,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(신용) 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1.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(동의여부에 대해 V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당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(신용)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이용 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

-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 - 보험금지급·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,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
 - 금융거래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·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, 자동이체 등 접수) 관련 업무
- 수집·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 - 보험금 청구서상 개인(신용)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운전면허증번호, 주소`, 직업, 전화번호, 전자우편 주소 등), 계좌정보
 -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(신용)정보[경찰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조사서, 증명서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]
-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 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5년간 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보험사기 방지·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·이용하며, 별도 보관)

2.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(동의여부에 대해 V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당사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

- 개인(신용)정보 조회목적: 보험금지급·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
- 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 : 보험계약정보,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 (사고정보 포함)
- 조회동의 유효기간 및 조회자 (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)의 개인(신용) 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 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간 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보험사기 방지·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·이용하며, 별도 보관)

3.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(동의여부에 대해 V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당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

-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
 - 신용정보집중기관 :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
 - 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,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(위탁사업자 포함)
 - 보험회사 등 : 생명보험사, 손해보험사, 국내·국외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,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
 - 업무수탁자 등 : 보험금지급·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(보험사고조사업체, 손해사정업체, 의료기관·의사, 변호사, 위탁 콜센터, 손해보험협회 등)
-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 - 신용정보집중기관 :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
 - 공공기관 등 :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(위탁업무 포함)
 - 보험회사 등 : 보험사고조사 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,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
 - 금융거래 업무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·수납)
 - 업무수탁자 등: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·계약 관리 업무

- 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 : 「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」의 정보내용(단,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의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)
- 제공받는 자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·이용 기간: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 (최대거래종료 후 5년까지)
 * 거래종료일이란 보험계약 만기, 해지, 취소,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, 채권·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*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www.chubb.com/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4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(동의여부에 대해 V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기 개인(신용) 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 정보(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·운전면허증번호)를 처리(수집·이용, 조회, 제공)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·운전면허증번호)처리	동의함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본인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.

본인은 보험약관을 숙지하였으며 본 청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내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,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, 귀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.

본인은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시 담당부서 및 연락처, 예상심사기간, 예상지급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며 기명날인 합니다.

날짜: 20 | |년 | |월 | |일

아래 계약자 동의인 작성 및 서명해주시고 피보험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도 필히 동의인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.

동의인	주민등록번호	연락처	피보험자와의 관계
계약자/피보험자	(서명)	(계약사항과 동일)	(본인)
법정대리인	(서명)		

“보험사기(고의사고, 허위사고, 피해과장, 허위입원·진단·장해, 사고 후 보험가입 등)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”